

대법 “기업, 육아 부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 의무”

고용승계 후 워킹맘 본채용 안해...부당해고 주장 1심 부당해고 인정...2심 적법한 해고 판단, 1심 파기 대법, 원심파기...“기업서 지원의무 다하지 않아”

육아를 부담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배려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달 16일 건물종합관리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상고심에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파기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건물종합관리업체 A사는 고속도로 유지·관리용역 경쟁입찰에 참가해 고용승계를 전제로 한 도급계약을 따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영업소 영업관리팀에서 서무주임으로 일하던 B씨의 고용을 승계하고, 수습기간 3개월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워킹맘이었던 B씨는 이전 업체에서 근무할 때 출산과 양육을 이유로 초보근무를 면제 받고, 공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 받았다. 이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 중 A사로부터 초보근무, 휴일근무 등의 지시를 받았지만,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

A사는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했다며 B

씨의 본채용을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B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을 통해 A사의 부당해고를 인정했지만, A사는 다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원고인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A사가 지시한 초보근무나 공휴일 근무가 적법하다고 할 수 있지만, B씨의 수습평가 과정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본계약 거부통보는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다만 2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A사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B씨가 수습기간 조정한 점수를 받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B씨와 중앙노동위원장이 상고한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이 같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

건을 환송했다.

대법원은 B씨가 워킹맘이라는 사정만으로 초보근무, 공휴일 근무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모의 자녀 양육권은 헌법에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근로자의 양육을 배려하기 위한 국가와 사업주의 일·가정 양립 지원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만큼 사업주는 육아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사업주가 부담하는 배려의무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서 사업주가 일·가정 양립 지원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본채용을 거부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사업주의 책임을 명시했다.

지원의무를 다하지 않은 근거로는 ▲양육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지원하지 않은 점 ▲영업소 여건을 고려할 때 충

분히 지원 가능한 점 ▲서무주임에게 공휴일 근무를 지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고용승계 사안인 만큼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 점 등을 들었다.

대법원은 “원심이 엄격한 기준에 따라 A사가 B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를 다하였는지를 심리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환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배려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며 “사업주가 부담하는 배려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이 육아기 근로자 자녀의 양육을 지원할 책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 판단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일·가정 양립이라는 가치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오유나기자



요소수 대란 우려 1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요소수 상품이 진열돼 있다. 중국이 요소수 수출을 통제하고 나서면서 요소수 대란 사태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착하게 살면 안 된다’ 흥기 살인예비 20대 징역형 집유

살인예비와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배신감을 주체하지 못하고 살인을 예비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살인예비와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6일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후배 B씨의 집에 찾아가 술자리를 하던 중 B씨를 흥기로 위협하고, ‘착하게 살면 안 된다’면

서 B씨의 집 침대를 흥기로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자신을 지적 장애인으로 등록해 여자친구가 무시한다고 여겨 헤어졌다.

A씨는 이별 직후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도 거절당하자, 배신감에 흥기를 들고 여자친구를 찾아가려고 했다.

A씨는 이를 말리던 B씨에게 ‘적당히 하라’며 흥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집에서 흥기를 들고 나와 광주

구도심 바닥에 앉아 ‘착하게 살면 안 된다’고 새긴 뒤 눈에 띄는 사람을 아무나 살해하려다가 체포돼 목적을 이루지 못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일명 문지마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일으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A씨가 흥기를 들고 배회한 행동을 반성하는 점, A씨의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 관찰 명령을 내린다”고 판시했다.

이슬비기자

“왜 그만둬” 돈 뺏고 주먹질...성 착취 업주 징역 2년

자신이 운영한 성 착취 업소에서 일했던 여성들에게 감금·폭행·공갈 등의 범행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감금치상·공갈·사기·협박·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 자신이 운영 중인 성 착취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 B씨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B씨를 마구 때리거나 협박하고, 대출받아 집을 구매하겠다고 속여 500만 원과 신분증·휴대전화 등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5월 사이 성 착취 업소

에서 일하던 여성 C씨와 사귀던 중 이별 통보 소식을 듣자, C씨를 장시간 승용차에 가둔 뒤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C씨에게 400만 원을 빌려 갖지 않아 빚 값을 것을 독촉받자, 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가족·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털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